



Monitoring Reports  
모니터링 리포트

Vol.13 \_ 2013년 10월

이 사람의 향기 |

류경민 울산광역시의원, 통합진보당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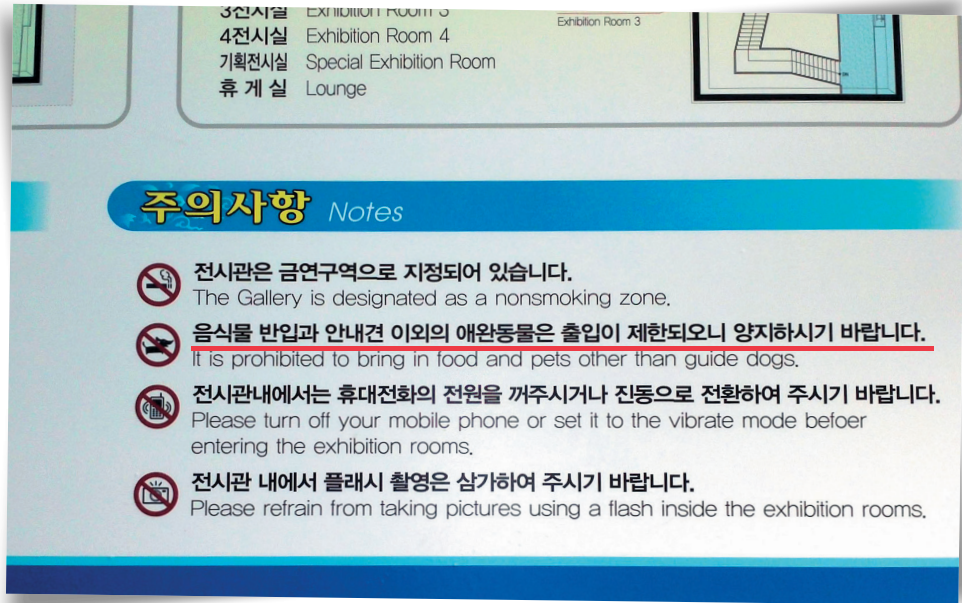
포커스 |

장애인 출산지원 조례 제개정운동의 작은 결실

이슈분석 |

성년후견인 제도의 쟁점과 정책 과제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필요성



애완견 No! 보조견 Yes!

지자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체육시설들은 정문안내판에 애완동물 출입제한을 공시한다. 시설물 보호와 방문자의 쾌적한 관람을 위해서다. 하지만 이뿐이라면 장애인 접근을 제한하는 건 접차별이다. 시각장애인이 보조견을 데리고 입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조견은 고도로 훈련받은 개라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짖지도 않고 근무중에는 대소변도 가린다. 우연히 보조견 동반을 허용하는 전시관 안내 문구를 발견하고 지인의 손전화에 저장했다. 의도한 건 아니나 휴가 가서 방문했던 문화시설마다 장애인 접근성을 살펴보게 되었다. 사진 찍은 이유를 설명하자 지인이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다. 직업 병?(사진: 하멜전시관 정문안내판, 전남 여수시 중화동 소재)

# Monitoring Reports

# 모니터링 리포트

Vol.13 \_ 2013년 10월

## CONTENTS

02	장애와 이미지	애완견 No! 보조견 Yes!
04	편집자 편지	새롭게 보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
05	칼럼	꿈은 이루어지는 것일까?
09	이 사람의 향기	류경민 울산광역시의원, 통합진보당 의원
16	이달의 우수 의정사례	정신장애인과 사회통합
18	포커스	장애인 출산지원 조례 제개정운동의 작은 결실 — 전주시·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27	이슈분석 1	성년후견인 제도의 쟁점과 정책 과제
31	이슈분석 2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필요성

## 새롭게 보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벌써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년후견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후견심판 청구절차와 후견인 활동비 등을 부담할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원하면서까지 성년후견인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제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가지는 문제와 한계를 보완하여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신장보호를 지원하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하면서 일관되게 성년후견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월 진행된 제10차 권리위원회에서도 오스트리아 정부에게 성년후견제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고 오스트리아 정부도 성년후견제를 대체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성년후견제에 대해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년후견제가 장애인의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이 제도는 여전히 장애인은 능력이 떨어지며,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의사결정능력’ 및 각 개인의 고유한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른 판단의 문제를 누군가 대신 판단하고 선택하며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판단능력과 사무능력이 떨어지므로 누군가의 케어가 필요하다는 전제와 장애인도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며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선택과 판단,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시스템과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지는 제도의 목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존중과 수용, 배려의 척도를 가늠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성년후견제의 논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을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고 장애인에 대한 시각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 꿈은 이루어지는 것일까?

글 왕애려 한국화교 장애인협회 회장

내 나이 어느새 50대 중반. 살아온 반세기 동안 나에게 삶은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생각대로 잘 살아 왔는지 반문을 하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자신이 선택해서 자의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 절름발이라고 놀림받던 것 보다 '짱개' 라고 부르는 게 더욱 싫었던 기억이 난다. 그래도 이 땅을 떠나지 못하고 꾸역 꾸역 살아 오면서 뭉텅 잘려 나간 소수 집단에서 소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살아온 것 같다.

우리는 한국에 관광차 온 것도 아니고 잠시 유학온 것도 아니고 더더욱 불법체류도 아닌데다가 그저 이곳에서 태어났고 자라면서 삶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비롯한 갖가지 의무 사항을 준수해온 주민으로서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해 달라는 주장은 당연한 권리를 찾는 것임을 살면서 한참 뒤에야 깨달았다.

30년 동안 그냥 누워 있다 어떤 서비스도 받지 못한 친구를 보내면서 안타깝고 슬펐고, 자식보다 하루 더 살게 해 달라는 노모의 소원도 뒤로 한 채 이 친구는 또 다시 다른 가족의 부담으로 남아 몸과 마음이 지치는 상황에서 연명하는 실정이고, 이에 우리에게도 차별 없이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달더라고 나서기로 했다.

2011년 1월 26일 한국 정부는 드디어 재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을 공포하였고, 우리도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여기저기 매달리면서 국회 본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언론에서는 외국인도 70가지가 넘는 복지 서비스를 받는다고 홍보하고 우리는 정말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은총을 받은 양 기뻐하였다. 그러나 기대에 부풀어 있을 때가 현실로 나타났을 때보다 더 좋은 법이다. 정부는 1년이란 준비기간을 갖고 2013년 1월 27일 이후에 내국인과

동일한 내용 및 방법으로 장애등록 절차를 진행하여 심사한다고 발표했다. 시간이 너무 짧고 촉박했는지 우리 당사자들은 진행 초기부터 매끄럽게 절차를 감지할 수 없었고, 오히려 시작부터 빠거덕됐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입력이 안 되네요’ ‘전산시스템에 안 넘어 가네요’ ‘글쎄요 좀 지켜 봐야 합니다’ .... 정말 사람의 마음을 바짝 바짝 타게 했다.

심지어 한국전쟁시 폭탄의 파편에 부상을 입은 분에게 지금까지 잘 살아 왔는데 왜 이제 와서 장애인 등록을 하느냐? 어쩌면 비싼 검사비용들여 놓고도 탈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 분은 저 보고 결정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포기할 것지를. 나중에 4급관정을 통보받고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비로소 한시름 놓았다. 설득 끝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신청하는 것이 어렵고 까다로운 것은 고사하고서라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2항은 제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을 다루는 신설조항인데 ‘...등록한 장애인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다. 특별한 시행령·시행규칙도 없기에 발 맞추어 순차적으로 나가나보다 추측했다. 그런데 실상 많은 서비스 제공 여부에서 외국인은 제외됨을 알았다. 또다른 차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법 제정과 동시에 곧바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장애인 등록이 안 되서 특수교육을 받을 시기를 놓치고 성장한 친구에게 중증 장애1급의 복지카드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필요한 지원서비스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등록 장애인이면 허용되는 대중교통 감면 또한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고 한다. 정부는 관할 소속 공무원에게 물어 보라고만 하고 지자체도 중앙정부의 명령에 따라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 이 피구 놀이에 우리 제외동포와 외국인 장애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오랜 동안 신장 투석을 해온 분이 3월말에 마치 큰 벼슬을 얻는 것처럼 나에게 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복지카드를 받아 기뻐서 전화를 한적이 있다. 현재 제한받고 있는 서비스는 나중에 모두 제공할 것 라고 믿고 크게 걱정은 안 한다면서, 그렇게 길 세월 기다렸는데 복지카드 받고 연결 되는 서비스가 무엇이지 파악하기도 전에 허무하게 카드 제시가 필요 없는 하늘나라로 가셨다. 너무 야속스럽기만하다.

제발 외국인 신분으로서 장애인등록이 안 된다면 서비스라도 개방해달라 했는데 아이러니하

게도 지금은 등록은 할 수 있으나 필요한 서비스는 충족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럼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어쩌면 행정부는 향후 예상하지 못 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있어야 하고 제32조제2항은 그런 측면에서 안전 모드 구실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도 제대로 못 받는 서비스를 어떻게 외국인 장애인에게까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가라는 강한 문제제기와 함께 말이다. 밥 그릇 빼앗는 것으로 취급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왜 단지 여기서 같이 사는 장애인으로 인식해주고 보편적인 기본적인 권리가 부여돼야 삶의 조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일까?

한국은 이제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시기를 지나 다문화사회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 인구는 2008년 10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하고 매년 10%씩 증가하여 지금은 150만 명에 이르렀다.

다문화 사회가 된다는 것은 민족·인종·종교·문화에서 다양성이 보편적인 삶의 양식으로 인식되고 보장되는 평등한 상호공존의 사회로 이행됨을 의미할 것이다. 어느새 지방에는 외국인을 위한 복지관도 설립하고 다문화를 위한 많은 지원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국인이 좀더 쉽고 빠르게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더 많은 조력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有愛無礙(유애무애, 사랑이 있고 거리낌이 없다)란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다가 가면 좋지 않을까?

7월초 대만 국회의원이 한국의 전반적인 복지제도와 서비스 현황을 시찰하고자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이분은 근육 위축으로 휠체어를 이용한다. 그런데 장애마크는 표시되어 있는데 들 어갈 수 없는 화장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은 외국인장애인이든 내국인장애인이든 마찬가지였다. 접근성이 박탈당한 것이다. 무장애 환경이란 편의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과 이용을 의미한다. 많은 장애인들은 접근성이 열악한 탓으로 거주지역에서 사회로의 접근이 거의 제한된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높은 문턱을 낮추거나 없애는 것은 모든 사회 성원들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며 소수자를 중요시하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진정 공존하는 사각지대는 얼마나 되며,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들의 요구 및 실태를 파악하

여 정책에 수렴하는 것이 소수자들의 완전한 참여 실현의 첩경이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 등록절차가 쉽지 않고 외국인장애인은 자신이 활용 가능한 정책정보나 지식이 없거나 미약한 실정이다. 그러니 관련 정책 및 서비스를 수행할 인력 투입으로 더 나은 체계의 구축, 즉 효율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장애인도 또한 장애인 당사자로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야 하며, 이제껏 받아온 차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다음 사항을 과제를 삼고 노력해야 한다.

1. 국내의 장애인 단체와 연대함으로써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도모하면서 장애인 지원사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2. 많은 사람의 목소리에 반응하면서 실질적 진전을 위해 정책의 실천적 이행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 한다.
3. 다양한 외국인이 모여 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외국인이 하나가 되고 중심이 되는 단체를 설립해야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복지예산 확보 및 복지 사업에 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
4.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과 복지사업에 관한 연구를 촉진해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UN 장애인 권리협약 적용 5년, 장차법 시행 5년, 이 법안의 모든 조항의 내용들은 장애인 권익보장과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때이다.

7월 말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에 있는 분이 현재 외국인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정부에 개선안을 제출해 보겠다고 하여 만나지는 제안이 있었다. 나는 또 다시 열변을 하면서 설명을 했다. 이를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지방경찰청이라는 기구의 특성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놀림을 당해야만 했다. “너 혹시 블랙리스트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회가 될 때 마다 외국인 장애인의 고통스러운 삶의 조건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다. 외국인 장애인에게도 이 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이다. 판도라 상자에서 결국 악은 다 빠져 나가고 마지막으로 희망만이 남아 있었듯이, 이 희망의 줄을 놓치지 않고 내외국인의 분리가 아닌 모두 한 울타리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작은 소망을 품으면서...

## 늘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인터뷰 · 정리 김애영 모니터링센터 연구원



**류경민**  
울산광역시의원, 통합진보당  
의원

지난해 울산장애인인권포럼에서 주최한 우수의회 시상식에서 2012년 울산광역시의회 장애인 정책 우수의원 1위에 선정된 류경민 의원을 만났다. 시의원으로서 장애인 정책에 관련한 그간의 활동과 어려웠던 점,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물었다.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Q** 그간 저희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지방 의원들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난해 울산장애인인권포럼에서 주최한 시상식에서 2012년 울산광역시 의회 장애인 정책 우수의원 1위에 선정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의원님께서도 울산지역의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발언하신 양이나 내용면에서 두드러져 보이는데, 이처럼 장애인 정책에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은 시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돈 많고 권력 있는 주류의 사람들보다 힘없고 약한 시민들을 대변하는 것이 의원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에서 활동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애인단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특히 여성단체 활동을 하면서 함께 해왔던 장애인여성회, 시각장애인여성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들과 연계하면서 자연스럽게 장애인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Q** 민선3기 3차년의 임기동안 지난해 '울산광역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와 올해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울산에서는 지난 2011년 장애인관련 단체들이 모여 장애인관련조례제정 연대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조례 모임에 함께 하였고 그 모임에서 몇 가지 조례를 만들자고 논의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조례'였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조례'는 울산시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제정하는데 쉽지 않아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는 다른 시도에서 이미 많이 제정되어 있고 조례 제정연대모임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여론을 만들면서 조례가 제정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전검사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해보니 울산시는 해당시설이 한군데도 없더라고 요. 처음 조례를 제정할 당시 집행부가 워낙 강하게 반대해 해당시설이 축소되어 제정되었기

때문이지.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Q 울산광역시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 비교적 제정이 늦었는데요. 후발주자로서 장점도 있고 또 나름대로 부담도 있었을 텐데요. 참고한 지역의 조례나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 늦었습니다. 그런 덕분에 잘 만들어진 조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 생각합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은 장애인들에게 있어 꿈입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을 나와서도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던 서울시 조례를 바탕으로 자립생활지원금, 탈시설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정착금, 자립 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Q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살펴보면 '제5조 사전검사원 위촉에서 15명 이내의 사전검사원을 위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 10명 이내로 명시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이는 동 조의 2항 장애인·노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으리라 짐작되는데요. 어떤 형태로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조례는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장애인위원회와 함께 만든 조례입니다. 울산시당에는 장애인 기관,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장애인당원들이 꾸준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명도 장애인에 국한시키지 않고 법안에 따라 교통약자인 임산부, 노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도 장애인위원회에서 제안한 겁니다.

**Q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에 제 6조 사전검사원의 의무, 제 7조 사전검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제 10조 예산확보, 제 11조 사무위탁 등의 조항을 신설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는 보건복지부가 3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집니다. 그래서 검사원들이 사전에 교육을 받는 등의 의무를 이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결과보고서제출, 예산확보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무위탁은 울산시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단체가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여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Q 2011년에 열린 출산지원조례 제정 토론회 이후 비록 제정은 되지 않았지만, 토론회를 계기로 조례제정연구모임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관련자들과 토론과 정보의 공유의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이런 모임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의정활동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 의정활동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해 보니 의원들이 여러 분야를 잘 알아야 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깊이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가장 도움 되는 건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더군요. 장애인 단체들과 모임을 하면서 제가 자료를 보거나 책을 통해서 얻는 것 보다 훨씬 더 생생한 정보들을 취할 수 있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Q 장애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씀해주세요.**

장애인 단체가 너무 많이 있는데 이들의 의견을 다 같이 담아내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이 보수적인 곳부터 매우 진보적인 곳까지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더군요.

**Q 민선5기 울산광역시 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장애인 정책의 다양한 분야에서 질의를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증차 계획, 메아리복지원 성폭력 사건, 성인장애인학교 지원 실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쉼터(그룹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정신보건센터, 장애인가정 지원 등이 그것입니다. 언급하신 부분을 포함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까? (그 이유도 함께 말씀해주세요.)**

제가 아무래도 여성단체 출신이다 보니 장애인 분야도 장애여성과 가족 쪽에 관심이 가져지더군요. 장애인 성폭력문제, 장애가정 아동에 대한 보호, 장애인여성들의 출산과 양육문제



등에 관심이 있습니다.

**Q** 메아리복지원의 성폭력사건은 울산지역에 큰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울산광역시의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까? 해당 사건의 정황이나 대책,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센터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건이 터지고 저는 메아리 복지원을 방문해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함께 대책위를 꾸려서 활동을 했고요.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제가 본회의와 상임위를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고 여론화 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의회차원에서 진상규명을 밝힌다든지 문제제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도가니 영화 이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메아리 복지원 내의 장애인 간에 인권유린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었고 저희는 법인의 전면적인 혁신 등을 요구하였지만 행정적으로는 시설장 등이 물러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Q** 회의록을 통해 울산지역의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이하 장애인콜택시) 증차계획에 대해 질의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울산의 장애인콜택시에 투입된 예산, 운행대수, 증차계획 등에 대해 소개해주십시오.

올해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 콜택시를 5대 더 증차하는 걸로 약 2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고요. 운영비는 연간 17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박맹우 시장은 공약을 통해 장애인 콜택시를 80대까지 증차하겠다고 했었는데 부르미<sup>1)</sup>가 워낙 예산이 많이 들다보니 작년부터는 일반 택시와 협약을 맺어 장애인 콜택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르미를 확대하지 않고 일반 택시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는 약 80대의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휠체어장애인이 탈 수 있는 부르미는 약 29대 정도 운영되고 있고,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약 50대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울산지역에서는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콜택시)을 부르미라 칭한다.

**Q 평소 장애인 정책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는 편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당에 장애인위원회가 있어 그 분들에게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편이고요. 장애인 조례 제정 모임 등을 통해 만난 장애인 단체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3-4. 앞으로 추진해보고 싶은 장애인 정책이나 조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지난 도가니 영화 이후 일명 도가니 방지조례로 명명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3년간 단체들과 의논해 왔는데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아 아직 발의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그 조례를 준비해서 발의해야 할 것이고요, '장애인 가정 임신출산지원조례'도 마무리해서 발의해야겠지요.

그리고 올해 시당 장애인 위원회와 함께 울산지역 장애인 편의시설을 직접 조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를 잘 해서 법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 보다 현실화 시켜 갈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Q 울산광역시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이 가지는 특수성, 혹은 장단점, 지자체의 의지 등 여러 측면에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울산을 흔히 부자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반면 복지부분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울산시의 장애인 정책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최초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만들어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확대해 나가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이 전국에서 가장 적고 자립생활조례가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프라가 취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무엇보다 탈시설, 자립을 위한 정책들을 강화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Q 그간 의원으로 일하면서, 기억나는 사례나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성의원이고 아직 애가 어리다보니 가장 관심 있고 애정이 가는 분야가 여성과 아동에

대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시에 아동, 여성 관련한 문제들을 많이 제기 했습니다.

올해 울산에 동네 곳곳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런 걸 보면 많이 뿌듯합니다. 또 장난감 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생겨나서 의원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집중해서 활동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날 수 있구나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의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과 자살예방네트워크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것도 큰 기억인거 같습니다.

**Q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선 5기 의정활동이 앞으로 약 1년 남짓 남아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을 대변해서 시민단체와 함께 꾸준히 활동할 것입니다. 하반기 의회에서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인 조례들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협동조합 활성화조례, 자살예방 조례 등을 발의하기 위해 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도 하고 있고 공청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조례를 발의하기 위한 준비도 해야 할 것입니다. 늘 현장에서 발로 뛰는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 정신장애인과 사회통합

**고만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새누리당)

**김상현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

2012년 09월 05일 240회 3차 보건복지위원회 발언 중

**고만규 의원**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또는 지원규범은 정신보건법이 유일한데, 동 법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에 관한 내용에 집중되어 실제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형편입니다. 또한 정신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조항은 과거 장애인복지법 상의 사회복귀시설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데 불과하여 이에 대한 새로운 규범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둘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셋째,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고, 넷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섯째,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중략 -

**김상현 의원**

(중략) 조례안의 제3조와 제4조를 보면, 제3조에 시장의 책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사회복귀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시장은 이 조례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제4조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실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서울시장은 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제5조부터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임의조항입니다. 또 제6조도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임의조항이고, 동조 제2항도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도 임의조항입니다. 제7조 이것도 마지막 부분에 가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도 임의조항이고, 제8조 교육·훈련의 지원도 ‘지원할 수 있다.’ 임의조항입니다. 제10조 자활 등의 지원 이것도 ‘지원할 수 있다.’ 전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 제4조에는 강제조항으로 하도록 해 놓고 나머지 조문에 가서는 전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됩니다. 아까 복지건강실장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제5조 같은 것은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러면 시장은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한 개를 하든 두 개를 하든 세 개를 하든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사회복지시설을 꼭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을 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조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고만규 의원님 제안 의원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의견을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 선정이유

우리나라 정신 장애인수는 2000년 23,559명에서 2011년 95,821명으로 약 4배 정도 증가했다.(2012년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그러나 한국의 정신장애인 정책은 여전히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배제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병상은 2000년 58,020개에서 2011년 93,932개로 꾸준히 늘어났다. 이를 OECD 국가의 정신병상수 변화추이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욱 명확해진다. 동 기관의 2012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의 ‘1980~2000년의 10년 병상증가율’은 미국 -0.3, 스웨덴 -1.30, 프랑스 -0.66, 그리스 -0.18, 터키 +0.01, 일본 +0.09로 한국 +0.49에 비해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정신장애인의 탈원화 및 자립생활, 지역사회로의 복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만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신장애인을 사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 보고, 이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해당 조례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한계점을 지적한 김상현 의원의 발의 또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 장애인 출산지원 조례 제개정운동의 작은 결실

## -전주시 ·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익수 센터 선임연구원, 법률모니터링 담당

### 장애인 출산조례 제정의 최근 현황

어떤 일이든 선택과 집중에는 기준이 있기 마련이다. 조례도 그렇다. 가령 장애인당사자 진영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준의 적용은 관심을 서열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줄에서 멀수록 덜 흥미로운 것인데, 그렇게 덜 관심받는 대표적인 조례가 『장애인가정(여성) 출산지원 조례』(이하 ‘출산조례’)일 것이다. 일례로 출산조례는 2008년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에서 제정붐이 일어났으나 저출산 문제해소라는 사회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지 장애인 출산지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

또 조례의 최초 제정일인 2006년 12월(천안) 이래 2012년 말까지(72개월) 67건이 제정되었으나 대략 한달에 1건은 제정된 셈이지만 13년도에는 아직 제정 소식이 없고 제정율도 27%에 불과하다.

## 장애인 가정/여성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전국제정현황

(2013.07.31.기준)

지역 지자체수 (본청포함)	서울 26	부산 17	대구 9	인천 11	광주 6	대전 6	울산 6	경기 32	강원 19	충북 13	충남 17	전북 15	전남 23	경북 24	경남 19	제주 1	계 244	
재정수	7	4	0	2	1	3	2	18	1	4	5	7	5	2	6	0	67	
지원	여성	3	-	-	1		1	-	5		4	5	4	4	2	3	-	32
	가정	4	4	-	1	1	2	2	13	1	-	-	3	1		3	-	35
제정연도	06										1						1	
	07				1			4									5	
	08	1						8		3		4					16	
	09	4			1		1	1			1	1	2	2			13	
	10					1	1		2		1				1		6	
	11	1	4				1		1	1	1	1	2		1		14	
	12	1					1	1	2			1	1	1	4		12	

### 출산조례 제정목적은 당사자의 시각으로 수정돼야

모두에서 밝힌 것처럼 출산조례 제정은 ‘저출산이라는 사회문제해소에 기여’ 하기 위해 장애인 가임여성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저출산 문제해결에 장애인도 ‘동원’ 된 셈이다. 때문에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제개정토론회를 개최하여 출산조례의 제정목적 변경을 제안했고 전주시 출산조례에 반영된 바 있다.<sup>1)</sup> 제정목적에 ‘출산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인간 본연의 행위로 존중받아야 한다’ 는 문구를 삽입한 것은 장애인은 법적으로 출생할 권리

1) 『전주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인간 본연의 행위로 존중받아야 함을 인정하며, 장애인가정이 사회생활에서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과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12.제정)

2) 『모자보건법』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를 제한받고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장애인은 우생학과 유전학이 태동한 이래 사회적 부담 혹은 결함·비정상으로 간주돼왔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2009년 현재의 모습으로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차별이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거니와<sup>2)</sup>, 대한민국은 1973년 이래 2009년도까지 25년간 장애인 낙태관련 독소조항을 유지했고 현재도 진행형이다. 2009년까지 존속한 조문 내용은 참담하기 그지없다(각주참조).<sup>3)</sup>

기존 법안에 문제조항이 존치중이기 때문에 자치법규의 출산조례에는 장애인이 출생할 권리를 의식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였다. 둘째, 장애인 출산이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출산 지원책은 출산이 장애인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과 출산에서의 양성평등을 존중하자는 데 일차 목적이 있다. 비용 문제만 놓고 보면 이제 한국에서 출산은 어려운 선택이 됐다. 장애인 출산은 더하다. 출산 장려라는 정책적 요구는 시급하나, 출산은 엄연히 남녀간의 사적인 활동이다. 당사자의 권리와 편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그 시각이 수정돼야 그 지원취지도 지지받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제정목적은 관(官)주도의 조급하고 편향된 시각으로 보인다.

또 법은 시대 정신을 온전히 반영해야 하므로, 출산조례는 출산에서의 양성평등 이념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례의 지급 대상이 장애인 여성에서 장애인 가정(남편 포함)으로 확대돼야 한다. 경기도에서 제정분이 일었던 2008년 당시에는 이러한 관점이 부족했다. 문제의식이 저출산 문제해소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놓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제정되는 조례들은 지급 대상은 '가정'이 대세다. 12년 중반까지는 '여성'이 더 많았으나, 13년 7월 현재는 가정이 35건으로 여성보다 3건 더 많다. 허나 양성평등을 고려했다기 보다는 대개 장애인 여성에게만 국한해서 지원하는 게 장애인 가정형편에 무지한 처사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듯하다. 동기가 어찌 되었든 결과적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 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최근 제정된 경상남도의 출산조례들은 지원대상이 가정이 아니라 여성이고 제정목적도 저출산 문제기여로 돼 있어 유감스럽다.<sup>4)</sup> 실상 지역별로 출산조례를 제정하는 시각과 문제의식에 시대적 격차가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정 대상을 선별하고 바꾸는 노력이 중요하다.



## 출산조례 제개정 운동의 작은 결실

- 성남시와 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작년에 출산조례 제개정 일환으로 두 번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5월 성남시, 6월 전주시). 성남시를 선정한 이유는 출산지원금 지급 실적에서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 2011년 경기도내 주요 대도시 출산 지원금 지급 실적 비교

지자체명	인구수	등록장애인수	지급 대상	지급 인원
안양시	50만 이상	22,610	가정	104
안산시	50만 이상	32,628	가정	104
성남시	50만 이상	36,550	여성	11

인구수 및 등록장애인수에서 비교적 대동소이한 경기도내 3개 시의 지급실적을 비교했을 때, 성남시는 타시에 비해 10배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급 대상을 장애인 여성으로 제한했

#### 3)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5조 신규조문 대비

개정전(1973년 5월~2009년 6월)	개정후(2009년 7월~현재)
<p>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전성 정신분열증</li> <li>2. 유전성 조울증</li> <li>3. 유전성 간질증</li> <li>4. 유전성 정신박약</li> <li>5.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li> <li>6. 혈우병</li> <li>7.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li> <li>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li> </ol>	<p>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p>

\* 연골무형성증 : 성장판에서 연골이 장골로 바뀌는 과정에 이상이 생겨 뼈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키가 자라지 않는 선천성 질병(중략). 성인의 평균 키는 남성은 131cm, 여성은 124cm 정도이다.(출처: 두산대백과사전).

\*\* 낭성섬유증 : 염소 수송을 담당하는 유전자 손상으로 신체 여러 기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선천성 질병. (중략) 호흡과 소화작용에 문제가 생긴다, 쉽게 세균에 감염되고, 이로 인해당뇨병이나 간 질환, 낮은 수질물 등의 증세가 생긴다. (출처: 두산대백과사전).

#### 4) 거제시(12.06.13), 거창군(12.06.22), 통영시(12.10.11), 산청군(12.12.31) 장애인 여성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



성남시「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개정을 위한 토론회(2012.05.25)

기 때문이다. 10배라 커 보이지만 예산 증액은 고작 1억 원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간 성남시에서 이 사안을 너무나 등한시 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하여, 성남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제정목적·지급대상 등등에 개정을 제안했다. 성남시는 해를 넘겨 올해 6월 말 드디어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개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주요 개정현황

내용	개정전(08.03.14)	모니터링센터제안(12.05.25)	개정후(13.06.28)
조례명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장애인가정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목적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	...출산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인간 본연의 행위로 존중받아야 함을 인정하며, 장애인가정이 사회생활에서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과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	변동없음 (여성장애인→장애인가정)
신청자격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여성 장애인	성남시 90일 이상 거주 장애인가정(사실혼 포함)	성남시 180일 이상 거주 장애인가정
지원대상	신생아 1인당 100만원	지원액 상향 5·18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포함	영유아 1인당 100만원

내용	개정전(08.03.14)	모니터링센터제안(12.05.25)	개정후(13.06.28)
중복지원	불가(차액만 지급)	타법령에 의한 중복지원 명시	관련 조항 삭제
추가지원	없음	쌍생아 가산지급 부부장애인 가산지급	쌍생아는 100분의 50 가 산지급

성남시는 지원대상을 가정으로 확대하고, 중복지원 불가조항을 삭제했으나 지급액은 변함이 없다. 또 쌍생아에 대한 가산지급을 신설했다. 안타깝게도 제정목적은 변동이 없었다. 제정목적은 예산문제가 아니라 가치·시각의 문제인데 여전히 장애인을 저출산 문제해소를 위한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또 지급대상에 국가유공자 등을 제안했는데 그 대상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부담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첨가되지 않은 것도 안타깝다. 또 관련 부서에 전화확인 결과 중복지원은 허용되어 다행이나, 조례에 명시조항을 신설하지 않아서 조례만 보면 중복지원 여부가 명료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성남시 출산조례 개정에는 숨은 에피소드가 있다. 애초 개정 토론회에서 지원대상이 장애인 여성으로 국한되어 안양·안산시와 10배 차이가 난 사실이 공표되었는데 시 소관부서는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5년간(조례제정 08년 이후 12년도까지) 성남시에 거주한 장애인가정에 지원금을 소급적용할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법률 불소급원칙)와 타부서 조례와의 형평성 문제로 13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장애인 가정부터 적용하기로 확정됐다(조례 제9조 부칙2)<sup>5)</sup>. 지원금 지급 소급적용 제안은 백지화된 것이다.

법률 불소급원칙은 법 운용과 제개정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긴 하다.<sup>6)</sup> 하지만 국민의 권리가 증대하고 복리가 향상된다면 원칙 적용의 예외를 허용하는 법해석도 가능하다. 이는 제정목적이나, 제정 원칙이냐는 가치판단의 문제다. 이 주제와 관련한 대표적 사례가 하나 있다. 1992년 청구시의회가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입법 발의하자 청구시는 법령의 위임에 의해 조례를 제정할

5) 제195회 성남시의회(입시회, 2013.05.15)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성남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및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내용 참조  
6) 가령 대한민국 헌법은 소급입법 적용으로 인해 국민이 잠정권을 제한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제13조제2항) 하고 있고 형법·민법·상법 등에도 불소급원칙 조항들이 있다.  
7)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8) 대법원 1992.06.23. 선고 9추 17판결(유효)

수 없기 때문에 입법을 반대하고<sup>7)</sup> 대법원에 제소했다. 관련 상위법률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행정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리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대법원 판결<sup>8)</sup>로 조례는 공포되었다. 또 그 여파로 1996년 김대중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소위 하위법이라 부르는 조례에 의해 상위법이 제정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법 제정 절차와 규율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는 논란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고사 속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성남시 토론회 개최 한달 후 전주시에서도 같은 토론회를 진행했다. 전주시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제안을 수용하여 조례 전면개정이라는 전례를 남겼다. 우선 제정목적이 달라졌다. 어떤 법률이나 마찬가지로겠지만 출산조례는 그 제정목적이 특히 중요하다. 기존의 제정목적에는 장애인 출산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저출산 해소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또 지원 금액을 상향조정했고 제정목적 외 신청자격, 지원대상과 중복지원 불가조항 삭제, 추가지원에서 센터의 제안을 전폭 수용했다(아래표).

### 전주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주요 개정현황

내용	개정전(08.03.14)	모니터링센터제안(12.05.25)	개정후(13.06.28)
조례명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목적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중략)	...출산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인간 본연의 행위로 존중받아야 함을 인정하며, 장애인가정이 사회생활에서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과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중략)	...출산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인간 본연의 행위로 존중받아야 함을 인정하며, 장애인 가정이 사회생활에서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과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중략)
신청자격	전주시 1년 이상 거주 여성 장애인	전주시 6개월 이상 거주 장애인 가정(사실혼 포함)	전주시 6개월 이상 거주자
지원대상	장애 1~2급 150만원 장애 3~4급 100만원 장애 5~6급 70만원	지원액 상향 5·18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포함	장애 1~2급 200만원 장애 3~4급 150만원 장애 5~6급 100만원 5·18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100만원
중복지원	불가(차액만 지급)	관련 조항 삭제 및 타법령에 의한 중복지원 명시	관련 조항 삭제 <sup>9)</sup>
추가지원	없음	쌍생아 및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가산지급	쌍생아 및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100분의 50 가산지급



전주시「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개정을 위한 토론회(2012.06.29)

그로 인해 전주시 조례는 추가지원과 관련해 새로운 선례를 남겼다. 일부 타시군구 조례에서 쌍생아 가산지급은 허용되고 있긴 하나<sup>9)</sup>,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 가산지급하는 곳은 전주시가 전국 최초다.

보통 부부가 모두 장애인일 때는 장애 등급이 더 높은 쪽에 맞추어 지원금이 지급된다. 허나 전주는 등급이 높은 자를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동시에 부모가 모두 장애인이면 거기에 또 100분의 50을 가산지급하는 것이다.<sup>11)</sup>

또 지원대상에서 국가유공자가 안산시에 이어 두 번째로 포함됐고 5·18 유공자는 전국 최초로 명시됐다. 제정목적 개정과 아울러 국가에 기여한 공이 있거나 국가폭력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손상을 기억하는 것은 필자가 볼 때, 장애인 출산조례에 ‘인권’ 이라는 속성을 확장한 또 하나의

9) 전주시 생활복지과 담당주무관에게 전화 문의 결과 국가법에 의한 해산급여 중복지원이 가능함

10) 출산조례 제정 67개 지자체 중 총 17곳(서울 동대문구, 부산 기장·북구·사하구, 울산 울주군·동구, 경기 과천·광주·안산·안양·의정부·파주, 충북 단양·전북 무주·익산·전주, 전남 영광·무안, 경남 고성)

11) 「전주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제4조제2항 및 동조 제3항제2호

성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출산조례는 애초에 복지관련 조례라기 보다는 인권조례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제정목적에 출산으로 인해 장애인의 사회활동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지원대상에서 한가지 더 언급할 것은 사실혼 관계 및 미혼모 지원 확대다. 일단 기존 조례중 '여성'만 지원하는 것을 '가정'으로 개정하고 새로 제정되는 조례도 여성만 지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사실혼 관계와 미혼모를 포함시켜야 한다.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나, 장애인당사자들의 여러 증언에 따르면 장애인 가정 상당수가 사실혼 및 미혼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특히 사실혼이 많다). 향후 출산조례에서 정책추진의 핵심사안은 사실혼 및 미혼모 가정으로의 지원확대며, 그것도 매우 시급하다는 게 지역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출산장려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인권과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지원이 절실한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가부장제의 전통적 '가족' 개념이 강한 한국에는 아직 없지만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진보연대'라는 이름으로 가족에 한정했던 복지지원책을 사실혼, 미혼모에게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이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나아가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부부로 출산지원이 확대되면 어떨까. 한국사회는 복잡·다양한 쪽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과 긴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 성년후견인 제도의 쟁점과 정책 과제

## I. 서론

비장애인 위주의 사회 구조 속에서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중에 겪고 있는 어려움은 매우 다양하며 심각하다. 이에 정신적 장애인(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이 개인 신상의 보호와 재산의 관리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어 온 것이 성년후견인 제도이다. 정신적 장애인 등에 대한 성년후견인 제도는 몇 년 전부터 몇몇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고,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이 위협받는 답답한 현실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래서 이 제도가 거론되기 시작한 이래 몇 개의 법안이 제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내용상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으며, 마침내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 공포됨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UN 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된 시점에서 본 제도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 II. 본론

우선,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 하에서는 손상을 가진 사람의 기능을 치료· 재활· 대체하기 보다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고 오히려 손상을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온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사회적 모델과 함께, 장애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자립생활운동이다. 자립생활운동에서는 아무리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지원과 자립생활 훈련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보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비롯한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하여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 속에 정신적 장애인 등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자립생활 패러다임에서 중증장애인 내지 정신적 장애인을 제외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한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재활 과정 자체가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문제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자립생활 패러다임에서는 전문가 중심주의를 지양하고 장애인에 의한 동료 상



담 등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2006년 12월 13일에 UN 총회에서 채택되고 2009년 1월 10일에 국내에서 발효된 장애인권리협약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특별히 제12조(법 앞에서의 동등한 인정)의 제2항~제4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2. 당사국은 장애인도 생활의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할지도 모르는 지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접근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4. 당사국은 법적 능력을 행사하는 데 관련이 있는 모든 조치들이 국제 인권 법률에 따라 남용을 방지할 적절하고 효과적인 예방책을 준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예방책은 법적 능력을 행사하는 데 관련이 있는 조치가 개인의 권리·의지·선호를 존중하고 이해의 충돌과 부당한 영향이 없으며 그 사람의 사정에 어울려 맞추어지고 가능한 한 최단 기간 동안 적용되며 권한권을 가지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당국이나 사법 조직에 의한 정기적인 재심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 예방책은 이러한 조치가 그 사람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본 제12조 제2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법적 능력’ (legal capacity)은 본 조에 대한 UN에서의 심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권리능력 뿐 아니라 행위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제3항에서는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이것은 접근 가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원을 받아서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지만 법적 능력을 대행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며, 더구나 이 과정에서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4항에서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포함하여, 법적 능력을 행사하는 데 관련이 있는 모든 조치들의 남용을 방지할 적절하고 효과적인 예방책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적으로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속속 제기되어 왔다. 2003년 제58회 UN 총회의 사무총장 보고서에서도 “성년후견인 제도가 때때로 부적절하게 활용되어, 아무런 절차적 보호도 없이 발달장애 혹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에게서 법적 능력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 등의 권리 행사에 대한 성년후견에 의한 제한의 범위가 매우 넓다. 성년후견이 결정되고 후견인이 지정된 장애인 등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만 제외하고 기타 재산을 매매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등 모든 법적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없게 된다.



성년후견을 받는 피후견인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약혼할 수 있고(민법 제802조), 약혼을 한 후에 성년후견·한정후견이 결정되면 상대방은 약혼을 파기할 수 있다(제804조). 심지어 결혼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고(제808조), 이를 위반하면 후견인 또는 상대방이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817조). 성년후견을 받는 장애인 등은 이혼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835조), 배우자가 외도하여 낳은 자식에 대한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도 후견인만이 제기할 수 있다(제848조). 성년후견인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낳은 자식에 대하여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인지(認知)하여 자식으로 입적할 수 있다(856조). 입양을 하는 것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873조).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은 재산관리 뿐 아니라 입원·퇴원, 요양원에의 입소나 거주 이전 등 신상에 관하여도 후견인의 간섭을 받고, 수술 등에 있어서 후견인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함으로써 치료가 강요될 수도 있다(947조의2). 후견을 받게 되면 유언도 의사능력이 회복되어야 할 수 있고(1063조), 증인도 될 수 없다(1072조).

이에 반해, 우리의 민법이나 기타 법령에서 성년후견 또는 한정·특정후견을 받게 되는 소위 무능력에 대한 기준·규정이 전혀 없고 이를 판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단 등 판정의 절차에 대하여도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가정법원이 사안에 따라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이 심판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때, 많은 학자들, 법조인들, 전문가들, 장애인개발원,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개정 민법의 성년후견제도가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서의 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조려하는 제도라고들 하고 있고 심지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이 각각의 위상 제고와 새로운 업무 영역 확대의 기회로 삼고자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제도는 동 협약 제12조에서 폐지할 것을 요구한, 의사결정의 대체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발달장애 등을 이유로 개인이 법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어떤 결정, 그리고 그러한 무능력의 결과로 개인의 대리인이 지명되어야 한다는 어떤 결정은 국내법으로 정해진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 의한 공정한 청문회 이후에만 내려져야 한다. 또한 능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변호사에 의하여 대리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의 성년후견인 제도는 오·남용될 위험이 많은 제도이므로 이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나아가 근본적으로 본 필자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반대하고 이에 폐지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것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정신적 장애인 등이 처한 현실을 필자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왜 성년후견인 제도이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애인에 대해 재산 관리 뿐 아니라 '신상 감호' 까지 장기간 동안 제공하는 시스템이 꼭 법원의 후견인 선임에 의해서만 출발되어야 하는지 다시금 처음부터 꼼꼼

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굳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현 장애인복지 시스템 내에 구축하면 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후견제도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주에 따라서 제한적 후견, 일시적 후견, 의료 관련 대리 결정인, 생활보조급부에 대한 대리 수취인, 자기주장을 위한 지원 훈련 등과 같은 많은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두 가지 형태의 지원으로 후견제도를 대체하여 왔다. 우선 '멘토'라고 번역될 수 있는 god man이고, 두 번째 형태는 Forvaltare인데 이것은 '관리인'이나 '수탁인'으로 번역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연락인', '개별지원인', '동행인' 서비스가 있다. 그리고 독일의 '보호제도' (Betreuung)는 최소 제한적인 대안적·절차적 사법의 원칙에 민감한, 융통성 있는 제도이다.

### III. 결론

후견인의 지정은 장애 권리 운동의 시각에서는 중요한 윤리적·법적·실천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장애인이나 노인 뿐 아니라, 그들이 무엇이라 분류되든지, 스스로의 결정을 할 권리를 도전받는 기타의 취약 계층에게도 또한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함께 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애인이 자신이나 가족의 부담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받는 아이러니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국가와 사회는 후견인의 활용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후견제도가 장애인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제도가 아니라 다른 최소 제한적인 해결책이 추구된 다음의 마지막 선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Herr, S. S., Gostin, L. O., & Koh, H. H. (Eds.). (2003).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Different but equ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필요성

김명실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장

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은 총 2,519,241명으로 이 중에 지적장애인 167,479명, 자폐성장애인은 15,857명으로 발달장애인은 총 183,336명으로 밝혀졌다. 전체 장애인에 겨우 7.3%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이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통칭하는데 특징은 지능이 70 이상인 일부 자폐성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지능이 70 이하로 판단능력이 미약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학령기를 마치고 성인기를 살아가야 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하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고용체계는 적성이 무시된 취업생활을 해야 하고 낮은 임금으로 성인기를 부모에게 의존하고 살아야 하며 부모는 자신의 노후뿐만 아니라 장애자녀의 노후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 2중의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또한 부모 사후에 자녀의 삶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법은 발달장애인의 전 생애를 가족이 전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2년 5월 30일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와 김정록 국회의원(새누리당)은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발달장애인지원법')을 13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그리고 지난 4.11 총선에서 6개 주요 정당에서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는 정치권의 변화를 보였다.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런 정치권의 변화에 낮은 감은 있지만 부모 사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러나 총선 이후 새누리당은 4월20일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지원법을 주요 민생법안으로 선정하여,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세 차례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발달장애인법안은 심사안건으로 회부됐을 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달장애인지원법 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 등급과 소득과 무관하게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 구현
2.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적인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서비스 조정
3. 발달장애인의 높은 실업률,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보장
4. 발달장애인의 낙후된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경쟁, 지원, 보호 고용 지원 강화

5. 발달장애인의 생활시설 중심의 거주 환경을 지역사회 중심의 독립 거주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완전독립형, 부분독립형, 공동생활형, 요양형 등 4개의 거주환경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주거지원센터 설치·운영
6.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촉진을 위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참여 기회 확대
7. 발달장애인 의료지원 및 물리, 작업, 언어, 심리 등 발달재활 지원
8. 발달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및 자기권리 옹호 기회 제공
9.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복지사 양성 및 배치
10. 발달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 및 권리 구제를 위한 권익옹호센터 설치 등 옹호 체계 마련
11. 발달장애인특별기금 등 재원 확보 대책을 조항으로 명시

한편, 이와 관련하여 정부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전달체제로 제시한 발달장애인위원회(안 제11조)는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활용하고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안제12조)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을 우선 활용하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안 제13조)는 현 장애아동지원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최저임금액에 준하는 표준소득보장금액지원(안 제42조)는 과도한 재정소요와 다른 장애유형과 형평성을 문제로 들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소득보장체계 내에서 단계적으로 조정&#8228;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건강 및 발달재활 관련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성인보다는 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종발달장애인지원 및 관리(안 제36조)는 기존법령 규정(「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과 유사하여 달리 정할 이유가 없다.
4. 직업 관련 서비스는 고용지원(안제 38조), 발달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안 제 39조), 지원고용(안 제40조)는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고용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유형 중증장애인과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주거 및 돌봄관련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주거지원서비스(안제45조~제 49조)는 발달장애인에 게만 특별한 형태의 주거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발달장애인들만 모여 사는 것이 적절한 지도 검증이 필요하며 돌봄지원서비스(안 제50조)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므로 발달장애인에게 별도로 법률을 정할 이유가 없고, 주간활동지원서비스(안 제51조)도 다른 유형의 중증장애인과 별도로 신설이 필요한 지 검토해야 한다.
6.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센터(안 제15조)에 관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운영 중인 장애인인권침해에

방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7. 서비스 제공자에 관해서는 의사소통지원 조력자(안 제33조), 행동지원 전문가(안 제34조), 발달장애인복지사(안 제76조), 발달장애인 서비스조정자(안 제 77조), 발달장애인재정관리사(안 제78조)는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유사한 자격을 신설한다는 것은 자격관리 및 국민 인식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8. 발달장애인 특별기금의 설치·운용(안 제8조)는 「국가재정법」개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내놓은 이견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에게 연간 1.6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부담, 타 장애유형의 중증장애인과는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기존의 장애인복지 또는 장애인지원체제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었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은 강점과 잠재력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며 자신의 선택과 의사결정에 따라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있다. 기본이념이란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로 간주해오면 발달장애인의 삶을 통제해왔지만 이제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 권리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겠다는 언론보도에 발달장애인들이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채 법을 제정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내놓았지만 법 제정 관련자들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면 발달장애인이 당사자로 정책수립에 의사결정자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의 삶을 이 전과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전달체계에서 발달장애인지원공단을 설치하고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외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수십 년을 발달장애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으나 국내에는 발달장애와 관련된 전문 학자가 없으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도 전문가가 없다. 그렇다보니 비용 대비 효율성, 효과성이 없는 이유는 모두 발달장애인의 몫이 되어 발달장애인의 잠재력 개발은 고사하고 실존 능력까지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체,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라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 이들은 즉각적으로 평가를 하고 개선을 하겠지만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평가에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장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의 경우 대부분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아니라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타 장애인조사결과에 취합하고 있는 실정으로

발달장애인의 현황이나 이들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알아낼 수 있는 척도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달장애 특성과 정서를 공유하는 발달장애 전문 연구자가 양성될 수 있는 기구가 설립되어야 하고 발달장애인 전문서비스 제공자가 양성되어야 한다.

소득보장, 직업관련 조항에서 정부는 타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의 범주는 늘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각장애 1급인 경우라도 직업이 교수이거나 변호사인 사람과 발달장애 1급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같은 범주로 다루는 것이야 말로 형평성의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발달장애 인법제정의 관점을 불평등의 원인을 경쟁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의 조건에서부터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는 상대적 평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막대한 재원부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가의 기능의 하나는 법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 법을 만들어 놓고 이에 필요한 자원마련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이 그렇고 무상보육이 그 예이다.

복지국가의 건설은 모든 나라들의 목표로 현재 한 나라의 장애인 보호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복지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장애인 복지가 추구하는 것은 첫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둘째, 차별로 부터의 예방, 셋째, 사회적 참여의 보상, 넷째, 자립생활의 조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의 공동책임으로 국가와 국민의 공동 책임이다. 따라서 정부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회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부모 사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앞장서는 것이 마땅하다.





# 인터넷에 장애인 ·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날개를 달자 !!

생명체와 같이 변화하는 정보(웹)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주된 장애인 기술 인력으로 구성된 표준 및 접근성 진단 · 컨설팅 전문그룹이며, 정보통신기술(ICT) 컨설팅분야 최초의 사회적기업입니다.

## 정보통신기술(ICT)컨설팅분야 최초 사회적기업

### ● ● ● 웹 표준 · 웹 접근성 진단컨설팅

웹 접근성 사전진단, 사후검수진단, 감수, 감리자문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용성 진단평가로 장애인 당사자 사용편의성 점검

### ● ● ● 웹 모니터링 서비스(Web Monitoring Service)

웹 표준화 및 웹 접근성 개선 사업 이후 웹 접근성 품질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 ● ● ● 웹 접근성(WA) 인증

웹 접근성 사전진단, 사후검수진단, 감수, 감리자문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 및 장애인 사용성 진단 평가 실시



T.(02)2678-0078

E-mail. webwatch@hanmail.net



# make the right real

"장애인권, 이제 실천입니다"

## 지역모니터링센터

서울 (대표: 이권희)	T.02.2252.90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3동 355-294 3층
부산 (대표: 김호상)	T.051.582.7116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2동 235-14 우신빌딩 2층
광주 (대표: 김 랑)	T.062.673.0420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1동 1261-2 1층
대전 (대표: 안승서)	T.042.286.0036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339-4번지 동진프라자 332호
울산 (대표: 성현정)	T.052.289.125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449-7 새한빌딩 5층
경기 (대표: 안미선)	T.031.906.309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778-2 남정시티프라자 806호
충남 (대표: 박광순)	T.041.579.2752	충남 천안시 두정동 1903 태산빌딩 202호
전북 (대표: 김미아)	T.063.229.198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647-1
경남 (대표: 문숙현)	T.055.283.131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68-1번지 토월복합상가 3층 303호
제주 (대표: 고현수)	T.064.751.8097	제주도 제주시 삼도2동 1112-22 1층